

1차 실업인정일 교육



I

제도 및 절차개관

- ①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희망카드 소개
- ② 실업인정 절차 안내

II

실업인정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③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안내
- ④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 안내
- ⑤ 수급 시 유의사항

III

실업인정 신청 및 서류 작성

- ⑥ 실업인정 신청
- ⑦ 서류작성

IV

요약 및 향후 일정 안내

- ⑧ 주요내용 복습 및 향후 일정 안내

1

실업급여제도, 실업인정절차 이해

2

재취업활동 유형 및 증빙방법 이해

3

수급 시 유의사항 숙지

4

실업인정 신청방법 이해

5

실업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제도 및 절차 개관

»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

- ✓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시
- ✓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
- ✓ 구직활동지원금 (통상 '구직급여')

실업인정

- ✓ **개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
- ✓ **지급 조건**: 1~4 주 단위로 실업인정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 ✓ **소멸 조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

» 담당창구 안내

▶ 구직급여 관련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창구번호
00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신념이 있는 한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센터
www.work.go.kr

수입·소득·일당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근로제공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실업 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신고 바랍니다.

00 ~ 00

실업인정 담당자



- ✓ 재취업활동 인정
- ✓ 취업사실신고
- ✓ 소득발생 등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을 처리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실업인정담당자		2019/04/20		
주민등록 번호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2019/02/2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이직 (폐업)일				
최초 실업인정일	1차 교육 당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일액 66,000.00		
연장 급여	종류	연장결정일	연장일수	수급기간 만료일	확인
재취업 활동계 획	이직(폐업)전직업	직종		월임금 (만원)	749
	취업희망1	직종		월임금 (만원)	700
	취업희망1	직종		월임금 (만원)	
심사청구 안내					
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019년 03월 04일			00지방고용노동청장장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김00	실업인정담당자	김00
주민등록 번호	123456-7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 2019/2/2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K12345678	이직 (폐업)일	2018/09/00
최초 실업인정일	2019/3/4(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9/00/00
소정급여 일수	120~270	구직급여 일액	00,000원

소정급여일수 1/2 = 조기재취업수당

- ✓ 1년 이상 재직
- ✓ 1년 이상 사업 영위

※ 자영업 예정자: 창구방문 필수

» 구직번호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김00	실업인정담당자	김00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
주민등록 번호	123456-7	수급자격 신청일	2019/2/2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K12345678	이직 (폐업)일	2018/00/00
최초 실업인정일	2019/3/4(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9/00/00
소정급여 일수	120~270	구직급여 일액	00,000원

구직
번호

K12345678

구직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미제출 시 실업급여 지급X

구직등록 정보 비공개 원칙

↳ 알선을 원할 경우 공개 전환

»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김00	실업인정담당자	김00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
주민등록 번호	123456-7	수급자격 신청일	2019/2/2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K12345678	이직 (폐업)일	2018/00/00
최초 실업인정일	2019/3/4(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9/00/00
소정급여 일수	120~270	구직급여 일액	00,000원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9/00/00

○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까?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 날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산정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김00	실업인정담당자	김00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
주민등록 번호	123456-7	수급자격 신청일	2019/2/2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K12345678	이직 (폐업)일	2018/00/00
최초 실업인정일	2019/3/4(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9/00/00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까?

↳ 실업급여 수급기간/일수

연령 \ 피보험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일액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김00	실업인정담당자	김00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자
주민등록 번호	123456-7	수급자격 신청일	2019/2/2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K12345678	이직 (폐업)일	2018/00/00
최초 실업인정일	2019/3/4(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2019/00/00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일액

○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일까?
↳ 1일 지급기준 금액

지급액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60%

₩

» 취업희망직종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성명	실업인정담당자				
	소정급여일수1/2시점 (참고사항 변경될 수 있음)				
주민등록 번호	수급자격 신청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000길 000				
구직 번호	이직 (폐업)일				
최초 실업인정일	1차 교육 당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일액				
연장 급여	종류	연장결정일	연장일수	수급기간 만료일	확인
재취업 활동계 획	이직(폐업)전직업	직종		월임금 (만원)	
	취업희망1	직종		월임금 (만원)	
	취업희망1	직종		월임금 (만원)	
심사청구 안내					
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019년 03월 04일					
00지방고용노동청장장					

취업희망1 직종

○ 취업희망직종이란 무엇일까?

- 실업급여 신청 시 워크넷 구직신청에 등록한 내용
- 워크넷에서 직접 희망직종 수정 가능



담당자 전화번호:

》가인정 처리 문의 담당창구 안내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가인정자

수급관련
기재내용 없음

가인정 문의: 00~00번 창구

취업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과 함께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전송하여야 합니다.
- 제3자(대리인)를 통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해외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외구직활동 계획시-담당자에게 계획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용센터의 재취업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거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급자격증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정 문의
00~00번 창구

» 실업인정일 안내

회차	구직활동기간	일수	지급금액	실업인정일	할일	기타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4차	...	...	...	...	...	
5차	...	...	...	...	...	
6차	...	...	...	...	...	
7차	...	...	...	...	...	
합계						

★ 구직활동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실업인정기간전체 지급X

★ 실업인정일(만료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지정하는 날에 방문(전송) 단, 구직활동은 만료일까지 인정

구직활동기간



28 일

» 실업인정일 안내

회차	구직활동기간	일수	지급금액	실업인정일	할일	기타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4차	...	...	...	...	...	
5차	...	...	...	...	...	
6차	...	...	...	...	...	
7차	...	...	...	...	...	
합계						

★ 구직활동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실업인정기간전체 지급X

★ 실업인정일(만료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지정하는 날에 방문(전송) 단, 구직활동은 만료일까지 인정



☑ 60세 이상/장애3급 이상 수급자:
구직활동 1건 (4주 기준)

5차
이후

총 2건

2차
~
4차

총 1건

» 실업인정일 안내

회차	구직활동기간	일수	지급금액	실업인정일	할일	기타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4차	...	...	...	...	...	
5차	...	...	...	...	...	
6차	...	...	...	...	...	
7차	...	...	...	...	...	
합계						

★ 구직활동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체 지급X

★ 실업인정일(만료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지정하는 날에 방문(전송). 단, 구직활동은 만료일까지 인정



II

실업인정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I 적극적인 구직활동



II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구직활동 개관

각각의 구직활동에 적합한 증빙자료 필요



방문 면접



우편 /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 면접 증빙자료



방문 면접



증빙자료

✓ 면접확인서 ~~에서 배부

면접확인서

■ 면접대상자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위 대상자가 구인 중인 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면접을 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명: _____
☐ 소재지: _____
☐ 사업장 연락처: _____
☐ 지원 분야(직종): _____

■ 면접확인자
소속/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OO지청장 귀하

이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사실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구인광고 + 명함 명함만 제출 시 구직활동 인정 X



» 우편/팩스 증빙자료



우편 / 팩스



증빙자료



구인광고



등기/발송
영수증



- ✓ 발송인
- ✓ 수취인
- ✓ 송신일



3가지 모두 확인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함



팩스 직접 발송 시 수신리포트 제출

» 인터넷 입사지원 종류



인터넷 입사지원



- 1

워크넷
(work.go.kr)
WORKNET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구직활동내역 조회)
- 2

취업포탈
사이트
saramin
JOBKOREA

- 잡코리아, 사람인 등
 - 구인광고 + 취업활동증명서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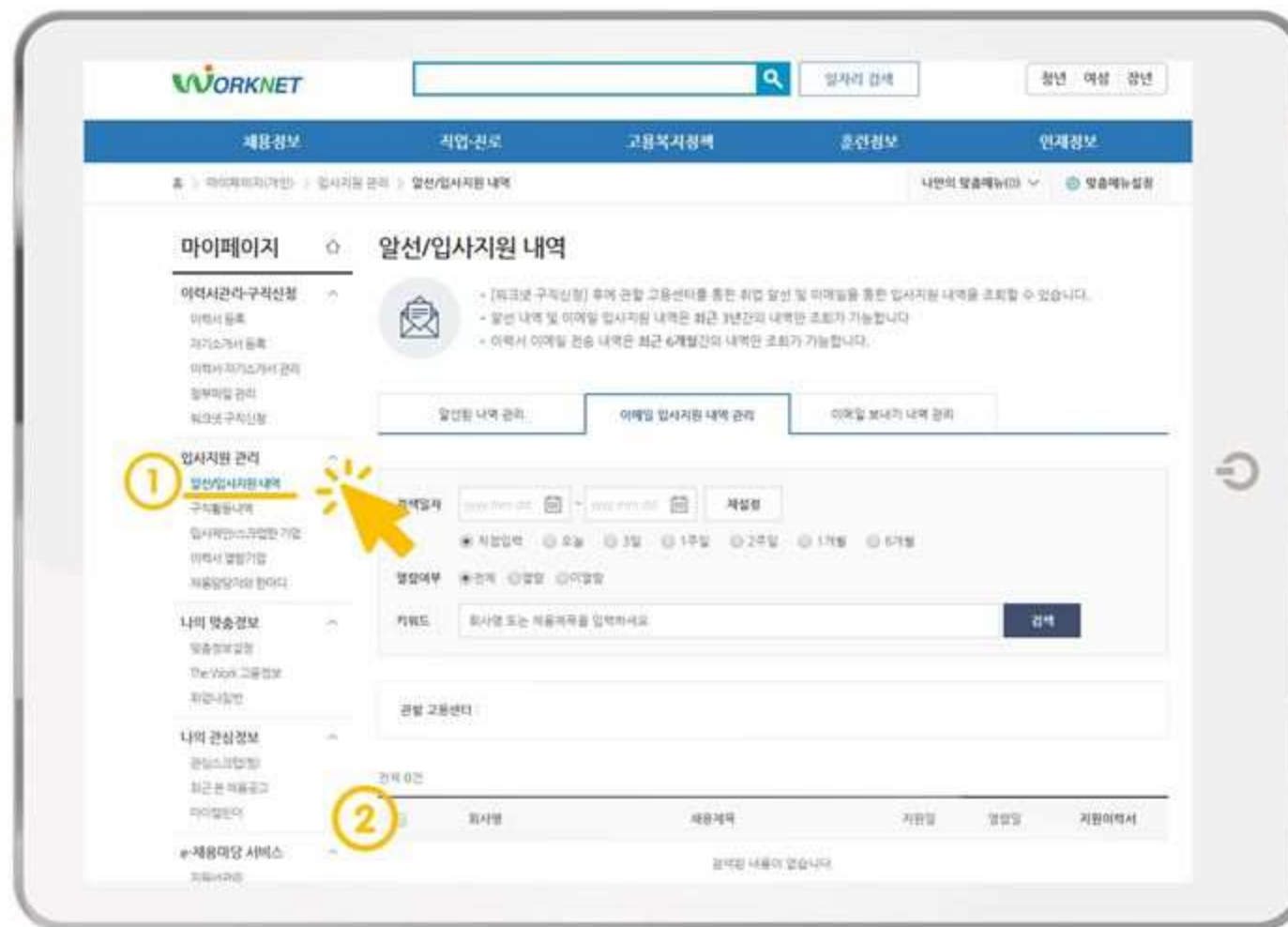
E-mail
입사지원

구인광고 + 보낸편지함
- 4

홈페이지
입사지원

구인광고 + 지원완료화면
(지원일 확인)

»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 불필요 - 구직활동내역조회

»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 워크넷 구직활동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안내 •

✓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워크넷 입사지원: 구직활동 인정횟수 제한

- 수급자 개인의 입사지원 횟수와 무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은 횟수만 계산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횟수 총 3회로 제한
- 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횟수 총 5회로 제한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구직활동에 대해 필수 모니터링 진행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2회 이상 확인 시 입사지원 제한

✓ 워크넷 구직정보 비공개 전환

- 비공개가 원칙이나 수급자 동의 및 고용센터 서비스 지원을 원한다면 공개
- 공개 전환 시 워크넷 상의 모든 구직활동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3-2.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전학기학업 경력직 채용

모집부서

구분	분야	전공	재직기간	연봉	근무지	지원 자격
대학	공	전공	부교수	연봉	대학	☐ 서양계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재직기간 - 공인 또는 영입 업무 경험자 - 공인된 재직기간 - 공인된 재직기간 - 재직기간 인정 기준

근무부서

전행방법

제출서류

본인 사생활으로 인한 중립적 중립, 1차 서류면담 합격자만 재면담으로 다시 입사지원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1. 입사지원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졸업증명서 1부
4. 졸업증명서 1부
5. 졸업증명서 1부
6. 졸업증명서 1부
7. 졸업증명서 1부
8. 졸업증명서 1부
9. 졸업증명서 1부
10. 졸업증명서 1부

제 2018-12345678 호

saramin

구직활동 확인서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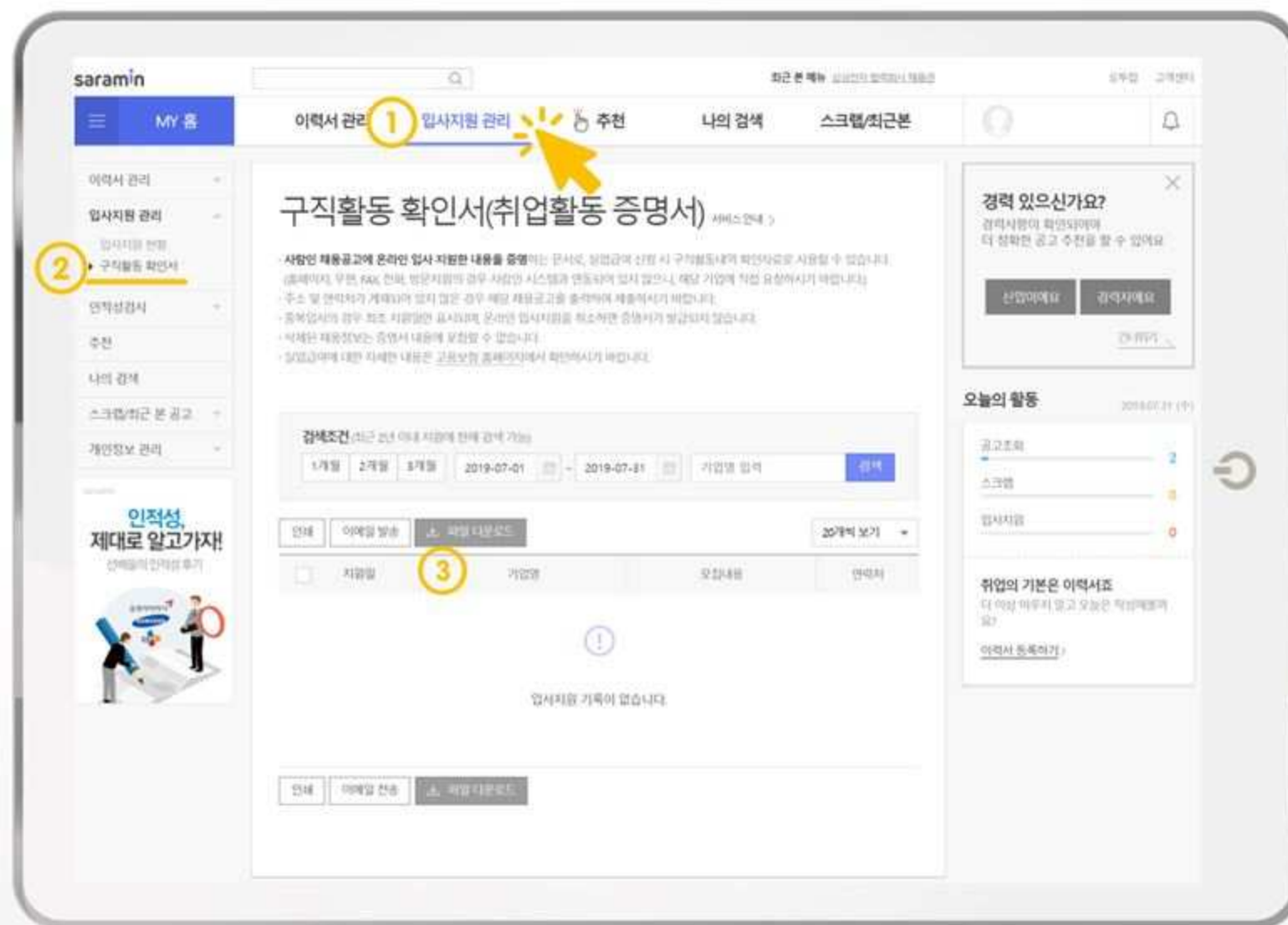
나의 취업활동현황입니다.

입사지원일	기업명	주소	연락처	지원방법	비고
2018.11.18	삼성전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02-1234-5678	온라인	

님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사람인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에 입사지원 하셨습니다.

사람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주)사람인HR

» 3-2.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



» 3-3. e-mail로 입사지원 시



증빙
자료



- ✓ 구인광고 + 보낸편지함
- ✓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 3-4. 채용기관 홈페이지로 입사지원 시

2018년 한국가스공사 하반기 채용공고문

(일반직 경력(4-5급) 및 일반직 신입(6-7급))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가스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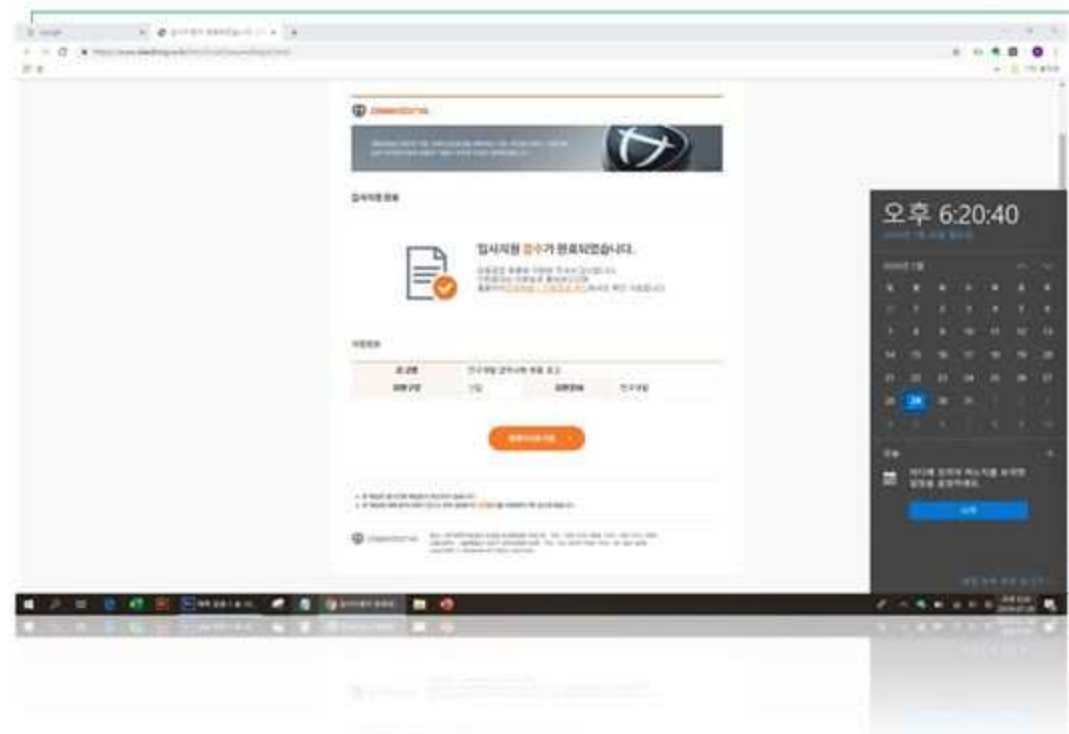
2018년 하반기 1차 채용*은 일반직 경력직(4-5급) 및 산업직(6-7급)으로 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관련 채용비리 입사지원정정책으로 입사한 자 포함하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되고 또는 직권면직 처분 될 예정이므로 입사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신입(6-7급) 채용 계획은 확정시 공고예정

또한, 기존의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및 '공정'하고 '정당'로운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므로 입사지원시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첨부#0 NCS지무능력자료(통합)
확인하기

첨부#0 채용공고
NCS능력자료(통합)



증빙
자료

- ☑ 구인공고 + 입사지원 완료화면
- ☑ 컴퓨터 화면 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I 적극적인 구직활동



II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증빙 자료

-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 ✓ 특강/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 ✓ 자영업계획서 + 자영업활동내역서(순차제출)
- ✓ 해외취업활동계획서 + 해외취업활동내역서(순차제출)

1

직업 훈련

2

특강
및
프로그램

3

자영업
준비활동

4

해외취업

» 직업훈련 증빙자료



직업 훈련

증빙자료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4주 단위로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구직활동 2건 면제

» 특강/프로그램 증빙자료



특강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증빙
자료

참가
수료증



취업희망프로그램

- 구직활동 2건 면제
- 소정급여일수기간 중 1번 인정

단기집단/취업특강프로그램

- 횟수제한 없음
- 동일 특강은 2번까지만 인정

심리안정 프로그램

- 소정급여일수 중 1회만 인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사회봉사활동 참여

- 한 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참여 후 확인증 필수 제출
- 구직활동 1건 인정

» 특강 프로그램 신청 방법

특강
프로그램
신청서

WORKNET
워크넷

일정
확인

1

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행사일정

취업지원프로그램

2

워크넷 접속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센터

»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



필수방문회차에는 특강신청 불가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안내

서류전형 준비, 면접역량 등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특강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1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상 '취업특강 바로가기' 선택

3

수강을 원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의 차시 선택

4

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

» 워크넷 모바일 앱 사용방법



입사지원



직업
심리검사



특강
사전신청



자영업 증빙자료

3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자료

자영업활동계획서			
경영인 (주주) 의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사업목적			
사업개시 예정일	200. . . .	세입자명(기관)	① 자활 여부 () ② 지원 예정 ()
사업내용	업종	세입난도(주주)사업개시기관으로 받	
	자본금	역년월	
	유급휴가 방법		
사업장소	소재지(국영도)		2차역(동명)
사업개시 추진일정	사업초대	기간 200. . . .	부터 200. . . .
		내용	
	사업장소 임대	계약	
	종업원 모집완료	계약	
날 월 일 인정인 (인) 또는 (자필)			

자영업 활동 내역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친척을 간접적으로 영생 경영, 사업에 참여의 「자영업활동 내역서」에 대해 1명(1시간조서)을 필수이며 그 외 1개 항목 이상 자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내역에 대해 경영 교육받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종류 업종명	업종	주요업종		기타업종
	주요업종	상업업종(주)		농
	업종			
	주요업종(소기업업종)			
사업내용	주요업종 목적사업			

- 사업조사 관련 활동 사업장 내역

활동일차	사업장명	사업종류(업종)	근로직	연봉정보	배우자(동거)직 정보
		(업종)			
		(업종)			
- 일차 및 월봉급에 관한 활동 내역

일차	주요(주요업종)정보(업종)		배우자(동거)직	활동내용
	주요	주요업종		
- 구입관련 내역(근로자배출관련)

구입일차	업종	구입(업종)	구입정보(업종)	주요활동업종
- 구매관련 내역(기타재 품)

구매일차	구매지	구매(구입품)	구매정보	구입내역 (구매 + 품명)

자영업 계획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순차제출)

» 해외취업 증빙자료



해외취업



증빙자료



해외취업
활동계획서



해외취업
활동 내역서
(순차 제출)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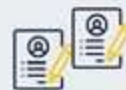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이 수첩에 기재한 경우



2

동일업체 중복지원



3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



4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 또는 전단지를 제출한 경우



5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 친구 등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6

구인공고의 희망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비매칭 되는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1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이 지난 후



재취직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or



사업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

2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frac{1}{2}$ 이상인 경우

“

지급대상 조건은 2가지 모두를 동시 충족하여야 함

”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 1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2 실업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3 대기기간(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
- 4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5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근로의 단절
- 6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 7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frac{1}{2}$

지급기준

근로자

근로자로서 재취직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일치해야 함

자영업

-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 자영업 활동 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
하야만 지급

⚠ 사업은 1년간 영위하여야 함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방법(12개월 후)

우편, 팩스, 내방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사업주확인서

+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자영업 계속
영위 증빙자료

인 터 넷

1

고용보험 사이트



2

조기재취업수당 작성



3

증빙자료 첨부 후 전송



총족여건, 지급 예외조건 확인



p00



문의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담당 00번 창구



»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연장** ”

1

취업
곤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2

부양
가족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3

재산
합계액



급여기초일급일액

74,000원 이하 (이직 전 사업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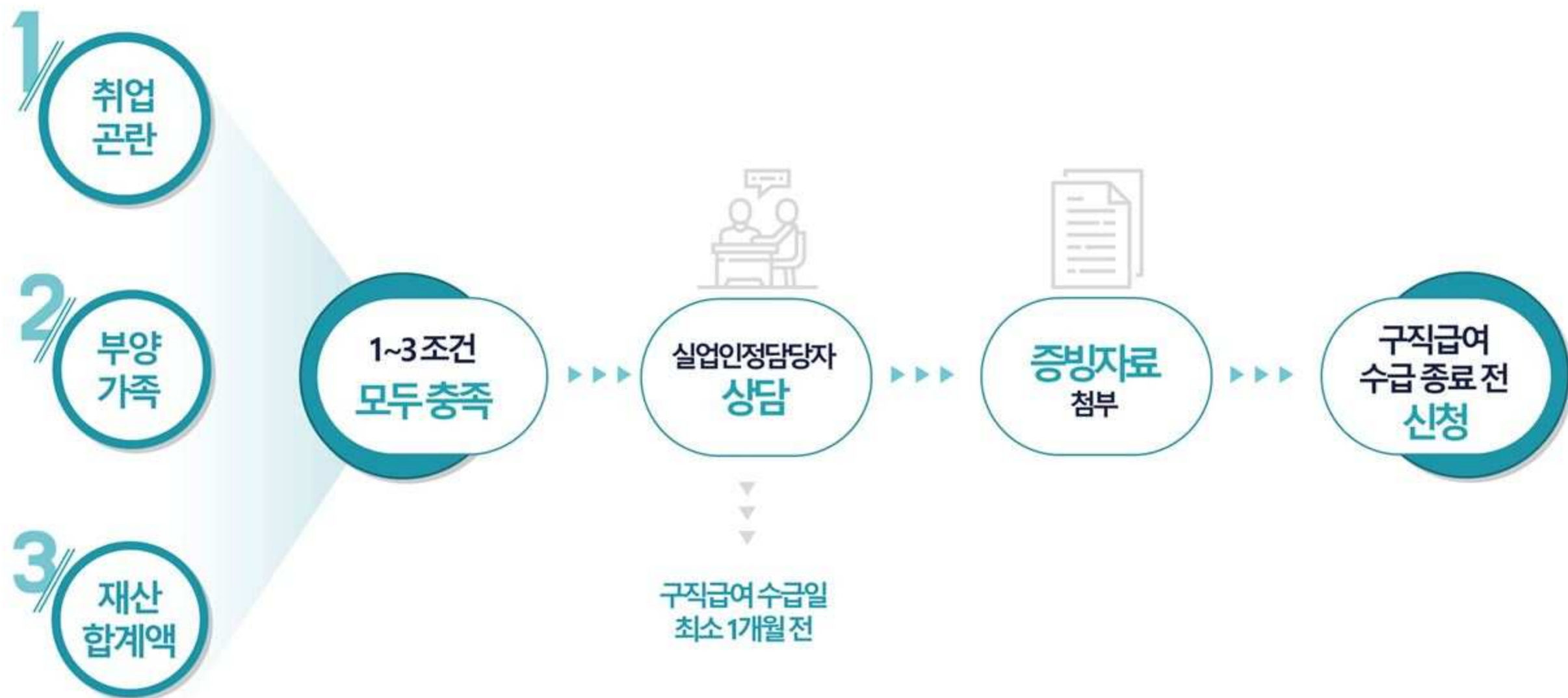
부부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 재산세 과세액 합계

160,000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신청 방법



»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훈련연장급여 개요

생계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능·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훈련지시를 받은 자에게 지급

지급대상

1//

재취업 용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노동시장
수요 감소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취업 곤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미취업되었을 것

4//

1년간 훈련 X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 훈련연장급여 훈련지시 신청

• 훈련지시 신청 •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해당자

우선 선정대상자(고용노동부 고시 2012-78, '12.9.25.)

- 개별연장급여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가장
- 중증장애인,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아 이직한 자 등

☑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는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훈련과정이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실업급여 관련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1 적극적 '구직활동'
- 2 구직활동 기간
- 3 취업한 경우
- 4 직업지도 거부 시
구직급여 지급 정지 될 수 있음
- 5 부정수급을 한 경우
- 6 방문일 착오 변경
- 7 자영업 및 자유직업종사자 준비 시
최소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방문상담
- 8 조기재취업수당
- 9 재실업신고
- 10 직업훈련 참여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출석부 지참
- 11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방문일/인터넷
전송일에 신고
- 12 실업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 도입·운영

» 유의사항- 취업한 경우 안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60일** 이내

- ✓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 ✓ 실업급여를 지급받음

신고방법은
2가지

- 1 인터넷으로 전송
- 2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취업사실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한 직전 날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모두 소멸**

» 유의사항- 방문일 착오변경 안내



- ☑ 단 **1**번만 가능
- ☑ 반드시 2주(14일) 이내
- ☑ 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



예비군 훈련

병원 진료

원거리 지방 면접



**증명자료
제출**

» 유의사항- 자영업 및 자유직업 종사자 준비 시 안내

자유직업종사자

보험설계

다단계

영업딜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로 분류



해당 직종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분들과 자영업예정자이신 분들은

자영업
계획서

+

자영업
활동내역서

매달

- ✓ 위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업인정 가능
- ✓ 자영업 **개시 전에 제출**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 ↳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을 개시 했다면 **수당 청구X**

자영업예정자



교육 종료 후
담당창구 **방문필수**

» 유의사항- 재실업신고 안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 시

「 퇴사한 다음날부터 원래 만료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 가능 」

» 유의사항- 근로사실신고 안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일이 있다면?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근로사실 **신고 필수**
- 근무 현장명, 연락처, 근로일 제출
- 수입·소득·일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 하루라도 늦게 신고할 시 **부정수급**



미신고로 중복수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경우



- 부당이득 환수
- 2번 이상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중지
- 그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수급자 본인 명의로 개설



통장 개설



은행 방문



계좌번호 요청



**압류방지통장
으로 사용**

» 문의처 안내

문의사항 발생 시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제도안내』

창구 담당자와
상담

1350
콜센터

고용센터
콜센터



III

실업인정 신청 및 서류작성

»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 제출
- ✓ 28일(4주)에 한 번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



» 구직활동내역 작성방법 안내

구직활동일	사업체명	소재지 또는 email,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지원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면담자 및 확인	활동결과
19.1.30	(주)고용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21	044-861-7000	경리	아래참고	아래참고	홍길동	대기중/미채용

구 직 활 동 일

서류 제출일,
직접 방문일,
면접일 등 구직활동을
한 실제 날짜를 기재

구직방법: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 고용센터의 알선 및 정보제공
- 친지, 학교 등의 소개(면접 확인서 제출)
- 신문광고(지면 인터넷)
- 취업포탈사이트(민간)
- 워크넷
- 기타(거리 현수막, 길거리 공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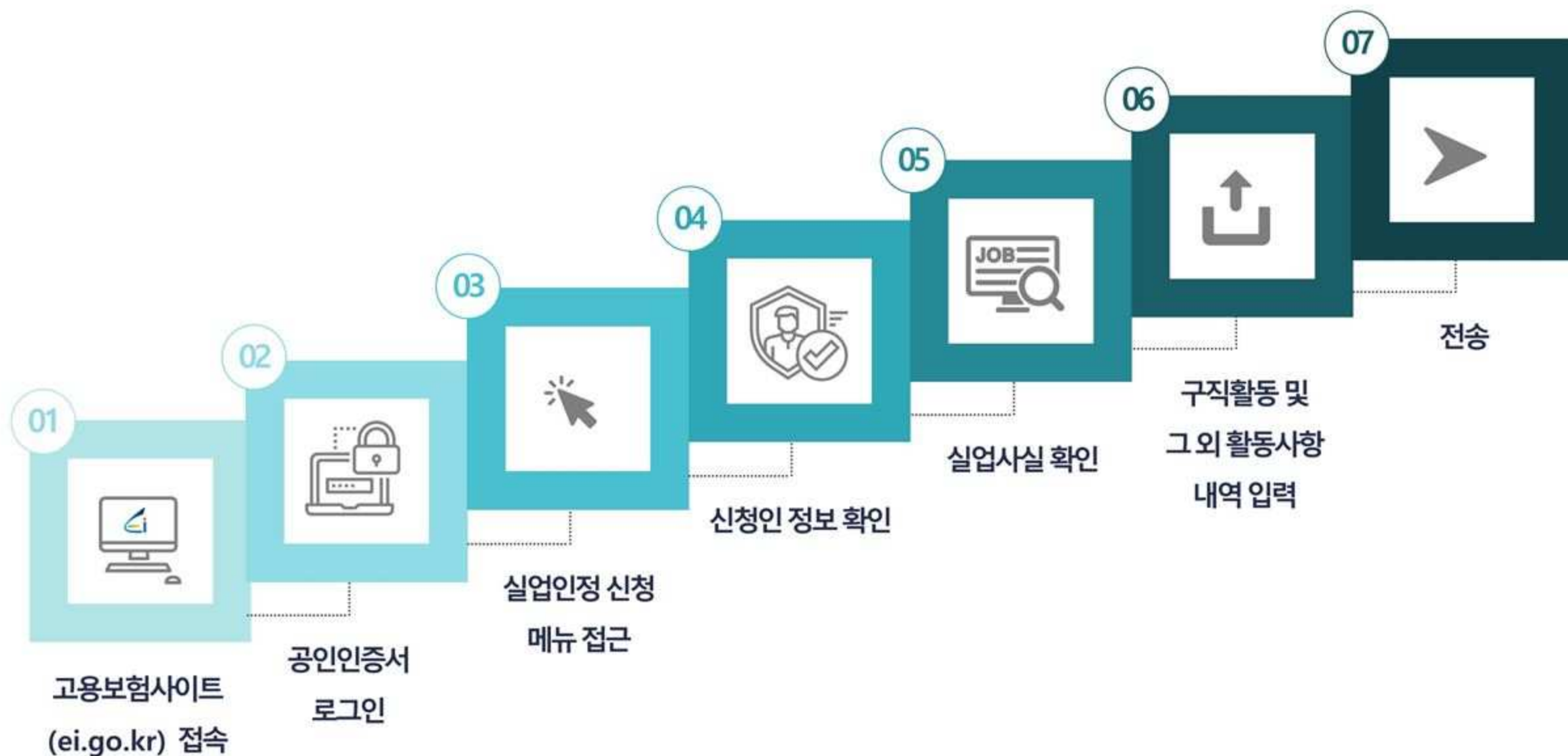
⚠ 채용정보를 지참/파일 첨부 하여 실업인정일에 전송

응모방식: 이력서를 넣은 방식

- 직접방문: 서명 또는 도장
- 우편: 등기영수증/택배영수증
- 팩스: 팩스 완료리스트 출력/지원회사팩스번호 기재
- 전자메일: 보낸 편지함의 보낸 내용 출력 또는 사진촬영
- 워크넷 직접 지원: 증빙자료 면제
-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내역(또는 취업활동증명서)

⚠ 증빙자료 미제출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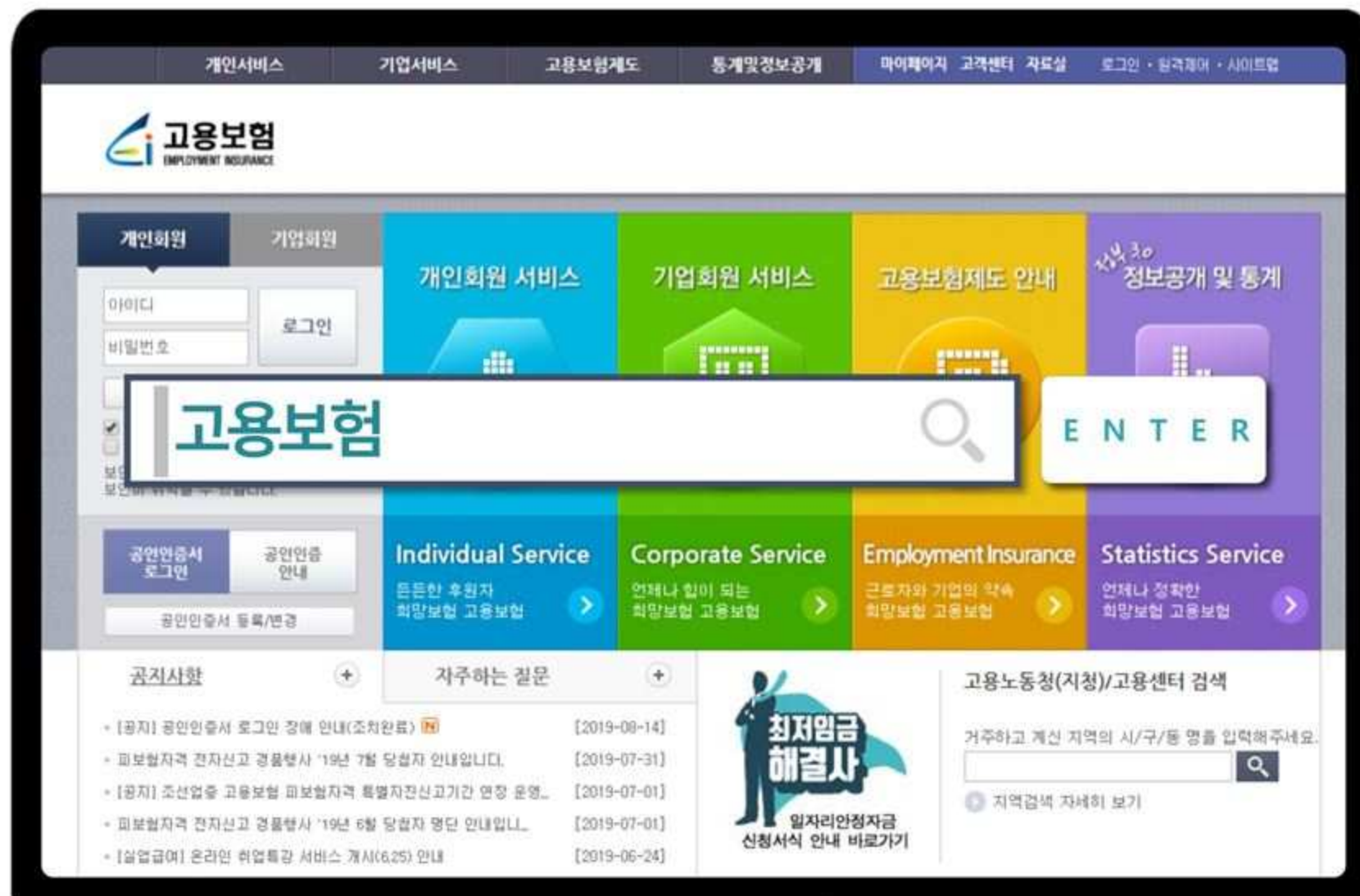


» 인터넷 실업안정 절차 안내

01



고용보험사이트
(ei.go.kr) 접속



» 인터넷 실업안정 절차 안내

0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3



실업인정 신청
메뉴 접근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4



신청인 정보 확인

> STEP 0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보기

STEP 01

STEP 02

STEP 03

> 신청인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표시된 용어는 간단한 용어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180일(85)일	총 실업인정일수	95일
수급기간	2016/03/11 ~ 2016/09/13	수급기간 만료일	2016/09/13
구직급여일액	43,416 원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5



실업사실 확인

> 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보기

STEP
01STEP
02STEP
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합니다.

⚠ 근로내역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보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근로내역

• 총 근로시간

시간

• 소득수령(예정)일



• 소득수령(예정)액

원

※숫자만 입력

> 실업사실 확인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보기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실업사실 확인 - 취업내역

보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6



구직활동 및
그 외 활동사항
내역 입력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 작성 (ex) 워크넷, 민간취업사이트, 전자우편, etc.
- 신청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 안 입력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 연동 - 증빙자료 불필요

! 구직활동 사항 기재 - 증빙자료 첨부

활동내역보기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 구직활동일자 (기간)(2016/06/21 ~ 2016/06/30)	• 사업체명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사업장 주소(E-mail)	• 전화번호
				- -
모집직종	보수수준	• 구직방법	• 응모방식	• 활동결과
		선택 v	선택하세요 v	선택하세요 v

구직활동 확인(워크넷)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6



구직활동 및
그 외 활동사항
내역 입력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취업지원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신청기준 >>

보기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 작성 ex) 계약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등)

+

-

선택하세요

> 첨부구비서류

※ 구직활동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함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2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에 특수문자

[!, * & ^ % \$ # @ ~ - :]를 넣지마세
오.)

찾아보기

+

-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7



전송

> 실업인정내역

실업인정일수	10 일	구직급여산출내역	43,416 * 실업인정일수 (- 근로내역)
지급액 (예정)	434,160 원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내역이 있을 경우 지급액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다음실업인정일 (예정)	2016/07/28 (7회차)	※ 다음 실업인정일은 예정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전송(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 되었는지 전송상태를 꼭 확인하신 후 인터넷 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하시고 실업인정일 17:00가 지나면 더 이상 회수(수정)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송을 원할 때는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민원현황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 반드시 전송을 눌러야 신청 완료

수정

삭제

전송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

07

전송

⚠ 신청서 수정 필요 시 회수 버튼

※ 귀하는 다음 실업인정
(다음 실업인정일은

※ 전송하시고 실업인
입력하신 내용을 다
나중에 전송을 원하

웹 페이지의 메시지



회수하시겠습니까?
회수를 하면 전송 내역이 삭제되므로 지정된 전송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 다시 전송하지 않으면 불출석자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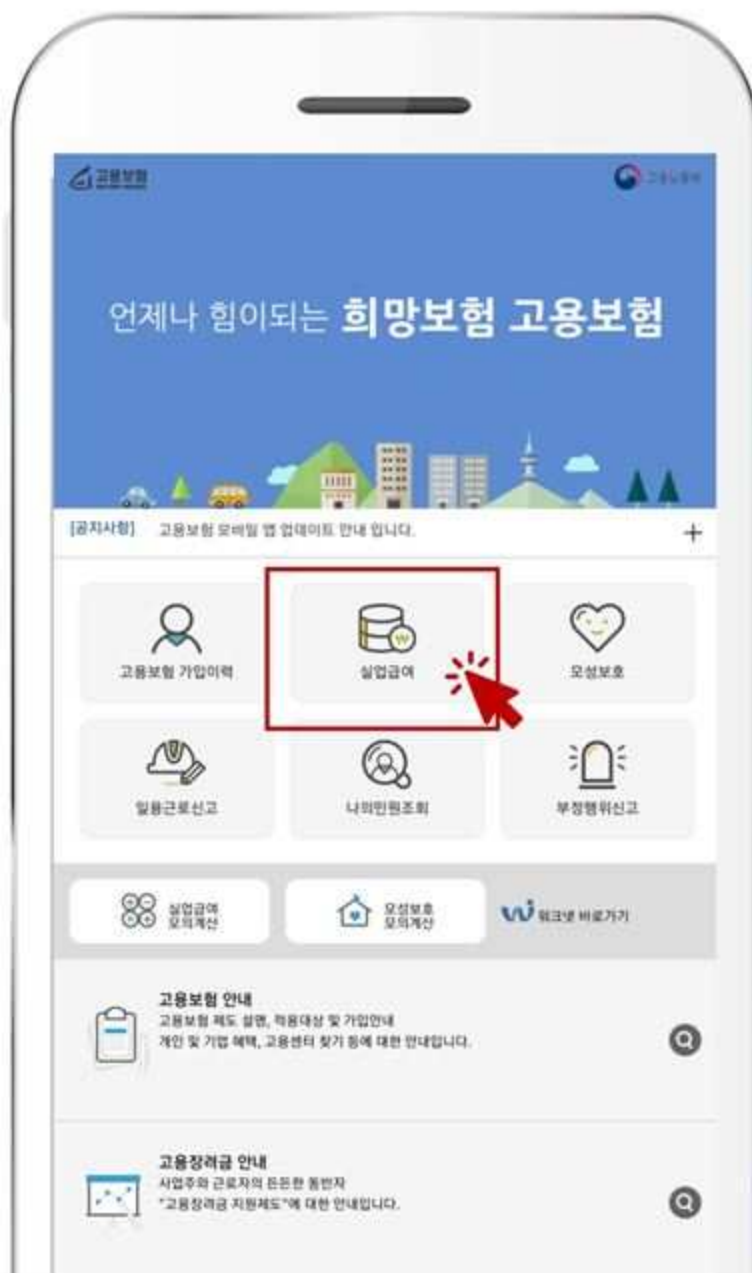
확인

취소

회수

확인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안내(모바일 앱)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인터넷실업인정 절차 동일하게 신청 가능

고용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접근

▶▶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1

-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가능
-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전송 버튼의 비활성화)
- ✓ 가급적 오전에 전송요망
- ✓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2

- ✓ 고용보험(ei.go.kr) ≠ 워크넷(work.go.kr)
- ✓ 구직활동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
- ✓ 워크넷-구직활동 결과 역시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최종 전송해야 함



3

- ✓ 해외전송/대리전송 불가 → 부정수급 해당



4

- ✓ 해외취업예정 →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필요



5

- ✓ 자영업예정자 → 창구방문 원칙, 인터넷 전송불가



» 실업인정신청서 등 서류 작성

실업인정신청서

1

실업인정
신청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2

재취업지원
설문지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3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날짜변경 1회 사용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을 기재

2차, 3차 실업인정 유형 선택

☒ 인터넷형

☒ 집체형

① ~ ③ 개인정보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소 + 휴대폰 번호

④ 지정된 출석일 yyyy.mm.dd

⑤ **실업인정대상기간** yyyy.mm.dd.~yyyy.mm.dd

☒ 날짜변경 1회 사용자 ⑤작성 안함

[illegible]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illegible]

⑥ 계좌번호 (필수 기재 사항)

- 실업급여 수급희망 계좌번호를 기재
- 압류방지통장 개설 예정자
→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개설 예정" 기재

⑦ 실업사실 확인

- ☑️ 근로사실, 사업자등록증, 산재휴업급여 여부 [M] 체크
☑️ [M] 있음 표시하신 분 담당창구 방문 필수(신고서 작성)

신청서 앞면 하단부 날짜 + 이름 + 서명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총 4페이지로 작성합니다.
2. 신청-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의 자료 불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의 자료 불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의 자료 불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의 자료 불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7. 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의 자료 불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8. 신청서 및 신청서 첨부서류의 자료 불부족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7.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신규신청 : 신청함 [M]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희망여부 + 신청서 뒷면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명 필수
- 기신청자, 비희망자 : 체크 안 함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 본 설문지는 수급자가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료지도 및 재취업지원 등 위한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질문항목				
1.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시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 예 → 2번 문항으로 ☐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 '예'를 선택하실 경우 "질문 희망하신 대상자"로 분류되어 해 실업인정일마다 전화 방문, 유선상담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2.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고 싶으신가요?				
☐ 센터 방문 ☐ 유선 상담				
3.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를 체크해주세요(복수 선택 가능)				
☐ 단순 구인정보제공 ☐ 적합한 구인업체 연결 등 업선 ☐ 전로지도(취업특강, 심리검사 등) ☐ 심층상담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 기타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자영업(프리랜서, 모형설계사 등 법인·개인 사업소득자 포함)을 계획하고 있나요?				
☐ 예(업종: , 개시예정일: , 자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활동:) ☐ 아니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취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 예(해외취업 중 재취업활동:) ☐ 아니오 * 자영업계획 혹은 해외취업이 있다면 상담 창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고용복지연계 서비스를 희망하면 체크해 주세요				
☐ 복지서비스(의료, 교육 등) ☐ 여성인력개발센터(취업 및 훈련 상담 등) ☐ 중장년인력개발센터(중장년층 취업상담 등)				

고용노동부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 허심탄회하게 작성



④ 예 [M] 체크 시

✓ 교육 후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 후 자영업활동계획서 작성



⑤ 예 [M] 체크 시

✓ 교육 후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 후 해외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부정수급 고지확인서 작성



부정수급 유형(예시)

- ✓ 반나절 일용근로 후 미신고
- ✓ 지인에게 일자리 부탁하고 받은 명함을 제출
- ✓ 퇴사했던 회사나 아는 회사 등에 가서 일을 도와준 후 미신고
-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법인 등기이사 등재 등 사실 미신고
- ✓ 취업결정 전에 며칠 근무한 사실 미신고
- ✓ 수습기간·교육기간 미신고
- ✓ 취업일자를 다르게 신고하여 1일분의 실업급여라도 더 수급
- ✓ 취업사실을 실업인정일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고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 실업(구직)급여 부정수급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자격에만 목적을 두고 재취업활동을 허위·형식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근로(일용근로 포함)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사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법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일용근로 포함)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사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법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정수급 유형 (예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적어 신고합니다.

- 반나절 일용근로 후 미취업미신고 생각하고 그 근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지인에게 일자리 부탁하고 받은 명함을 제출하면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한 경우
- 퇴사했던 회사나 아는 회사 등에 가서 일을 도와준 후 그 근로사실 미신고한 경우
- 보험설계사 등 특·위촉, 학습지교사 등 특·활동, 법인 등기이사 등에 사실 등 미신고한 경우
- 취업결정 전에 며칠 근무했던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수습기간·교육기간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일자를 다르게 신고하여 1일분의 실업급여라도 더 수급한 경우
- 취업사실을 실업인정일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고한 경우 등등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 실업(구직)급여의 지급중지(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같은법 제62조 제1항), 행정벌(같은법 제116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단, 영국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도 **통원·출입장제** 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은 2배 추징됩니다. 취업사실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시간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IV

요약 및 향후일정 안내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다음 중

센터에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회차는 언제일까지요?

”

1 2회차

2 3회차

3 4회차

4 5회차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다음 중

센터에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회차는 언제일까지요?

”

1 2회차

2 3회차

3 4회차

단,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필수방문 회차는
추가될 수 있음

4 5회차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다음 중 **구직활동 유형별 증빙자료의 연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 | | | |
|---|--------|-----|------------------|
| 1 | 방문면접 | ▶▶▶ | 명함 |
| 2 | 우편/팩스 | ▶▶▶ | 구인공고 + 등기/발송 영수증 |
| 3 | 워크넷 | ▶▶▶ | 불필요 (구직활동 내역조회) |
| 4 | 민간취업포탈 | ▶▶▶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
| 5 | 이메일 | ▶▶▶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 |
| 6 | 홈페이지 | ▶▶▶ | 구인공고 + 입사지원 화면 |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다음 중 **구직활동 유형별 증빙자료의 연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 | | | |
|---|--------|-----|---------------------|
| 1 | 방문면접 | ▶▶▶ | 구인광고 + 명함, 또는 면접확인서 |
| 2 | 우편/팩스 | ▶▶▶ | 구인광고 + 등기/발송 영수증 |
| 3 | 워크넷 | ▶▶▶ | 불필요 (구직활동 내역조회) |
| 4 | 민간취업포탈 | ▶▶▶ | 구인광고 + 취업활동증명서 |
| 5 | 이메일 | ▶▶▶ | 구인광고 + 보낸편지함 |
| 6 | 홈페이지 | ▶▶▶ | 구인광고 + 입사지원 화면 |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다음 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

-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직접 수첩에 기재
- 2 구인 중인 사업장에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
- 3 구인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이나 전단지를 제출
- 4 사업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기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다음 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직접 수첩에 기재

2

구인 중인 사업장에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

3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이나 전단지를 제출

4

사업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기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오늘 1차 실업인정 교육 후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는?

”

1

2

» 주요사항 요약 및 유의사항 복습 Quiz



“

오늘 1차 실업인정 교육 후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는?

”

- 1 자영업 및 자유직업종사(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원 등) 예정자
- 2 해외취업을 계획하는 사람

» 향후 일정

집체교육(2,3차)

- 날짜 2, 3차 실업인정일
- 시간 00시(00분 소요)
- 장소 실업급여 설명회장
- 준비물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 특징 구직활동 1회로 인정

출석(5차 이후)

- 날짜 지정된 실업인정일
- 시간 오전 00:00~00:00 /
오후 00:00~00:00
(12:00~13:00 업무불가)
- 장소 실업인정 담당창구
- 준비물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증빙자료(출력물)

» OO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입주 외부기관 서비스



» OO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입주 외부기관 서비스(예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유형	고용센터 입주기관
고용 서비스	40세이상, 생계형 구직자	중장년 일자리센터
	50세이상, 고학력, 구직능력이 조정이 필요한 구직자	서울시 50+재단 중부캠퍼스
	여성 구직자	여성새일센터
	지역 내 일자리, 거주지 인근, 단순 일자리 희망자	마포구청 일자리센터
금융 서비스	금융대출, 창업운영자금, 취약계층 자립지원금, 취업성공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삼성미소금융재단
복지 서비스	복지전반 (긴급복지, 생계급여, 의료/교육/주거/양육/자녀 돌봄)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복지 기초상담, 주제별 특화상담, 뷰티풀 라이프 연계, 창업상담지원	마포구 고용복지 지원센터
주제별 특화상담	신용회복, 파산, 회생	금융복지 상담센터 서울지부
	주거복지 상담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주거복지센터
	법률, 소송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
	정신건강 상담	마포구 보건소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공단 남부지사

» 교육 마무리 안내



필기구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
신청서

문의사항 담당자 안내

취업
소득발생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가인정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

일반 사항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등

실업인정
(00~00)
창구

수급자격
(00~00)
창구

교육강사

· 기타 문의/신고사항 없다면 창구 방문없이 퇴실 후 귀가 ·